

제 253 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12.8.)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해 용]

<의안번호 제2020 - 120호>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1. 2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2. 1.

2.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 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나)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2) 설치목적

- 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나)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 간 예수, 예탁을 통한 지방재원의 효율적 운용

3) 설치년도 : 2020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재정안정화계정)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
(통합계정)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예탁·예수하여 통합적으로 재원 활용

2) 2020년도 기금사업 개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162,560백만원 운용

(통합계정)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자원 예수, 예탁 창구 일원화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19년도말 조성액 ①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②=①+④	비고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160,000,000	2,560,000	10,000,000	△7,440,000	152,560,000	

※ 기존 재정안정화적립금 조성액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자금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①	융자금 미회수채권②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③	총 조성규모 ④=①+②-③
152,560,000	-	-	152,560,000

2) 재원조성

(재정안정화계정)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통합계정)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지원기준

가) 재정안정화계정

-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 채무부담 사업비,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나) 통합계정

- 다른회계와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지원대상 : 거창군 재정지원

3.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62,560,000	0	162,560,000	합 계	162,560,000	0	162,560,000
예치금회수	160,000,000	0	160,000,000	예치금	152,560,000	0	152,560,000
이자수입	2,560,000	0	2,560,000	기타지출	10,000,000	0	10,000,0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20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560,000	0	2,560,000	
	210		경상적세외수입	2,560,000	0	2,560,000	
		216	이자수입	2,560,000	0	2,560,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60,000	0	2,560,0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000,000	0	160,000,000	
	710		보전수입 등	160,000,000	0	160,000,000	
		714	예치금회수	160,000,000	0	160,000,000	
			714-01 예치금회수	160,000,000	0	160,000,000	
			수입합계	162,560,000	0	162,560,000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직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20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기획예산담당관	162,560,000	0	162,560,000
				재정·금융	162,560,000	0	162,560,000
				재무활동(재정안정화계정)	162,560,000	0	162,560,000
				보전지출(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2,560,000	0	162,560,000
				보전지출(재정안정화계정)	162,560,000	0	162,560,000
				602 예치금	152,560,000	0	152,560,000
				01 예치금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52,560,000	0	152,560,000
				701 기타회계등전출금	10,000,000	0	10,000,000
				01 기타회계전출금 ○ 일반회계 전출금	10,000,000	0	10,000,000
				재무활동(통합계정)	0	0	0
				보전지출(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보전지출(통합계정)	0	0	0
				지출합계	162,560,000	0	162,560,000

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①-②
	계①	전입금	이자 수입	계②	기타지출	
2019년	160,000,000	160,000,000	0	0	0	160,000,000
2020년	2,560,000	0	2,560,000	10,000,000	10,000,000	△7,440,000
계	162,560,000	160,000,000	2,560,000	10,000,000	10,000,000	152,560,000

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고
		'18년도말 현재액	'19년도말 현재액①	'20년도말 현재액②	증감 (②-①)	
예치금	농협	-	160,000,000	152,560,000	△7,440,000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 9. 29. 시행으로 기존 재정안정화적립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자금으로 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